

<여성가족부령>

청 소 년 기 본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

2023. 3.



여 성 가 족 부

(청 소 년 정 책 과)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개정이유

‘청소년복지 지원법’에 따라 실시하던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의 근거를 ‘청소년 기본법’으로 이관함을 주요내용으로 ‘청소년 기본법’이 개정됨(’22.12.27. 개정(법률 제 19130호), ’23.6.28. 시행예정)에 따라, 하위법령에 위임된 실태조사의 내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‘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’ 제1조의2(실태조사의 내용 등)를 ‘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’으로 이관(제1조의3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수렴 예정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3(실태조사의 내용 등)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청소년의 의식 및 가치관 등에 관한 사항
 2.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관 등에 관한 사항
 3. 청소년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 등에 관한 사항
 4. 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 생활 등에 관한 사항
 5. 청소년의 사회·문화 활동 등에 관한 사항
 6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되, 면접조사·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.
-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연구기관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),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-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게재해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‘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’ 제1조의2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는 제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설>	<u>제1조의3(실태조사의 내용 등) ①</u> <u>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</u> <u>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의 대상은</u> <u>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청소년의 의식 및 가치관 등에</u> <u>관한 사항</u> <u>2.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관 등에</u> <u>관한 사항</u> <u>3. 청소년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</u> <u>등에 관한 사항</u> <u>4. 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 생활 등</u> <u>에 관한 사항</u> <u>5. 청소년의 사회·문화 활동 등에</u> <u>관한 사항</u> <u>6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</u> <u>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여성가</u> <u>족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</u> <u>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<u>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식으로</u> <u>실시하되, 면접조사·설문조사 또는</u> <u>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</u> <u>있다.</u> <u>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</u> <u>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</u>

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정책과
관련된 연구기관(「고등교육법」
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),
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
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
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,
지방자치단체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이
지정하는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
등에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게재해야
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
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
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
장관이 정한다.